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제출) 일자	심 사 경 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2200986)	2024. 6.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4.9.2.) 상정 제429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1.17.) 상정, 심사
	윤호중의원 (2201750)	2024. 7. 15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4.11.11.) 제429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1.17.) 상정, 심사
	나경원의원 (2201781)	2024. 7. 1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4.11.11.) 제429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1.17.) 상정, 심사
	최기상의원 (2207335)	2025. 1. 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7.1.) 제429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1.17.) 상정, 심사
	이용우의원 (2210199)	2025. 4. 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7.1.) 제429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1.17.) 상정, 심사
	곽상언의원 (2210821)	2025. 6. 1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8.25.) 제429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1.17.) 상정, 심사

	강대식의원 (2211398)	2025. 7. 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9.17.) 제429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25.11.17.) 상정,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11. 17.)는 위 7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27.)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u> 2. ~ 10. (생 략)	제2조(공휴일) ----------. 1. ---------- <u>국경일</u> 2. ~ 10. (현행과 같음)